

사업체명칭

소재지

1 귀사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 있음 ▶ 노동조합 수는 몇 개입니까? (☐ 1개 ☐ 2개 이상)

☐ 없음

2 귀사는 기본급 임금체계 유형이 있습니까?

〈임금체계 유형〉 * 기본급의 임금결정 방법 유형을 묻는 것으로, 수당의 결정 방법(직무수당 등)이 아님

「호봉급」 호봉·근속년수가 상승함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제도(근속급)

「직능급」 근로자의 직무능력 또는 숙련 정도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제도(숙련급, 기능급 등)

「직무급」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제도

「기타 기준」 호봉급, 직능급, 직무급 외에 다른 기준

☐ 있음

▶ 임금체계 유형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선택)

☐ 호봉급	☐ 호봉표가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 호봉 상승에 따른 1년 간 기본급 상승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 0~2%미만 ☐ 2~4%미만 ☐ 4~6%미만 ☐ 6% 이상
☐ 직능급	☐ 직능자격 또는 직능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임금을 그러한 자격 내지 등급에 따라 설정하고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 직무급	☐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에 따라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정하여 임금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 기타 기준	()

▶ 귀사의 주된 기본급 운영체계는 무엇입니까? ()

① 호봉급 ② 직능급 ③ 직무급 ④ 기타 기준

☐ 없음

3 귀사는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연봉제」 근로자 '개인'의 능력,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개인의 임금 전부 또는 일부분을 연 단위로 결정하는 제도

☐ 도입하고 있음 ▶ 전체 종사자 중 연봉제 적용 비율은? (%)

☐ 도입하고 있지 않음

4 귀사는 성과배분제(집단적성과급)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성과배분제」 '기업, 사업장, 부서 단위'로 정해놓은 경영목표를 달성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현금, 주식 등의 형태로 사후에 배분하는 '집단적' 성과급 제도('개인별' 성과 평가를 통한 배분이 아님)

☐ 도입하고 있음 ▶ 전체 종사자 중 성과배분제 적용 비율은? (%)

☐ 도입하고 있지 않음

5 귀사는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운영하고 있음

▶ 정년제 구분 (택일) → (5-1번 문항으로 이동)

- ☐ 단일정년제 (정년: 만 세)
☐ 직급별 정년제 (최고정년: 만 세, 최저정년: 만 세)
☐ 직종별 정년제 (최고정년: 만 세, 최저정년: 만 세)
☐ 직급별+직종별 정년제 (최고정년: 만 세, 최저정년: 만 세)

☐ 운영하고 있지 않음

▶ 과거 정년제를 운영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6번 문항으로 이동)

「재고용 제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하는 제도(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하고 있는 경우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 운영하고 있지 않음

- | | | |
|-----------------------------|----------------|--|
| ☐ 감소 | 근로자 비율 ()% | ☐ 평균임금 감액률은?
☐ 0%초과~10%이하 ☐ 10%초과~20%이하
☐ 20%초과~30%이하 ☐ 30%초과 |
| ☐ 동결 | 근로자 비율 ()% | ☐ 0% |
| ☐ 증가 | 근로자 비율 ()% | ☐ 평균임금 증액률은?
☐ 0%초과~10%이하 ☐ 10%초과~20%이하
☐ 20%초과~30%이하 ☐ 30%초과 |

☐ 도입하고
있지 않음

- ☐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소중한 자료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